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7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3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이성윤 · 이수진
민병덕 · 김종민 · 김남근
이원택 · 박상혁 · 김용민
허영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톱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.

그런데 스톱킹행위는 장기간 반복·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,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7항).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“3개월”을 각각 “6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(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)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